

## 화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7. 23

다. 상 정 일 사 : 2002. 7. 23

(제105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 용 현

나. 제정사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및 동법시행령(2001. 11. 22)이 개정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군으로 권한 위임됨에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화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허가 또는 신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부과기준 정함.

《수수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별표2)

- 가로형 간판(6제곱미터 이하) 2,000원
- 세로형간판(6제곱미터 이하) 1,000원
- 돌출간판(3.5제곱미터 이하) 10,000원
- 지주이용간판(10제곱미터 이하) 12,000원

- 안전도 검사 수수료(별표3)
  - 옥상간판(50제곱미터 미만) 21,000원
  - 돌출간판(3.5제곱미터 미만) 14,000
  - 4층이상가로형간판(6제곱미터 미만) 14,000
  - 지주이용간판(10제곱미터 미만) 14,000

- 옥외 광고업 신고 수수료 (별표4)
  - 신규신고 : 15,000원
  - 변경신고 : 7,500원

2) 과태료 부과기준(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판)

- 옥외광고불법 표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3) 이행강제금 부과

- 명령을 받은후 그 조치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부과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부과기준과 부과절차 정함 (별표6)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외)
- 또한 연 2회 범위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계속해서 반복 부과 징수할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제정 조례안은 권한위임에 따른 허가권을 이양 받은 내용으로 절차상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견을 기쳤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하자나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은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기간은 군수가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

에 지속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상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상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권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

이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내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사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임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